



의안번호	제6호
------	-----

<p style="text-align: center;">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18. 3. 6.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6호
----------	-----

제출연월일 : 2018. 3. 6.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개정이유

-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현행화 및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간사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6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간사를 현재 업무에 맞게 업무 담당에서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주사로 변경
- 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2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당연직 위원 임명에 대한 단서 마련
-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사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사를 현재 업무에 맞게 예산담당에서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주사로 변경
- 라. 주민참여예산지원단 단원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항)
 - 주민참여예산지원단 당연직 및 위촉직 단원 구분 기준에 대한 단서 마련
- 마. 주민참여예산지원단 간사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4항)
 - 주민참여예산지원단 간사를 현재 업무에 맞게 예산담당에서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주사로 변경

바. 주민참여예산제 재정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제2항)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의 추진 시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 평가 : 2. 8.(청렴감사실) / 개선권고 반영

제11조(구성 및 운영)

③ 지역회의의 위원은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권고사유 : 위원의 자격 기준 및 결격사유 미흡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부족, 연임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음
- 반영사항 : 권고안 원안 반영

제15조(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권고사유 : 위원의 자격 기준 및 결격사유 미흡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부족, 연임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음

- 반영사항 : 권고안 원안 반영

제20조(구성 및 운영)

② 지원단은 시의회 의원,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비영리 민간단체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 권고사유 : 위원의 자격 기준 및 결격사유 미흡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부족

- 반영사항 : 권고안 원안 반영

(2) 성별영향 분석평가 : 2. 13.(사회복지과) / 개선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1. 23.(참여예산실) / 규제대상 아님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가) 예고기간 : 2018. 2. 6. ~ 2018. 2. 2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충청남도 소관실과 : 예산담당관(041-635-3512)

□ 개정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를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1조제6항 “업무담당으로”를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주사로”로 한다

제11조제7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5조제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제2항 “지원단은 시의회 의원,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비영리 민간단체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지원단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1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1. 당연직 단원: 친절행정국장, 행복도시국장

2. 위촉직 단원: 시의회 의원,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비영리 민간단체관계자 등

제17조제2항, 제20조제4항 중 “예산담당으로”를 각각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주사로”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로 발굴된 사업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참여예산실장	전 민 호
	재정지원팀장	강 의 정
	담 당 자	문 영 찬 (746-506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구성 및 운영)</p> <p>① ~ ②(생 략)</p> <p>③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p> <p>④ ~ ⑤ (생 략)</p> <p>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읍면동 <u>업무담당으로</u> 한다.</p> <p>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5조(구성)</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제11조(구성 및 운영)</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u></p> <p>④ ~ ⑤ (생 략)</p> <p>⑥ ----- ----- -<u>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주사로</u> ---.</p> <p>⑦ ----- <u>한 차례만</u> ----- . ----- ----- ----- .</p> <p>제15조(구성)</p> <p>② ----- ----- --<u>위촉하고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u></p>

현행	개정안
<p>1. ~ 4. (생략)</p> <p>③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7조(운영)</p> <p>① (생략)</p> <p>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예산담당</u>으로 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20조(구성 및 운영)</p> <p>① (생략)</p> <p>② 지원단은 시의회 의원,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비영리민간단체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 <u>한 차례만</u> ----- ----- -----.</p> <p>제17조(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u> <u>당주사로</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20조(구성 및 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1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u>다만, <u>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u>은 제외한다.</p> <p>1. <u>당연직</u> <u>단원</u>: <u>친절행정국장, 행복도시국장</u></p> <p>2. <u>위촉직</u> <u>단원</u>: <u>시의회 의원,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비영리 민간단체관계자</u> 등</p>

현행	개정안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원단장, 부단장은 지원단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u>예산담당으로 한다.</u>	④ ----- ----- <u>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주사--.</u>
⑤ (생략) 제25조(재정 및 실무지원)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생략) ② 시장은 <u>본 조례에 정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u>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u>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로 발굴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3. 미첨부 사유**

- 기존에 있던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으로 추가비용 발생사항 없음.
-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 없음.

4. 작성자

참여예산실장 전 민 호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 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안에 첨부 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 3. 사업공모
 -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